

예산총칙

2019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89,987,520	14,699,626
일반회계	466,648,886	13,999,467
특별회계	23,338,634	700,159
기타특별회계	23,338,634	700,15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53,260	19,598
주차장 특별회계	13,034,265	391,028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005,266	30,158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1,601,143	48,034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57,838	10,735
공공체육시설 특별회계	6,686,862	200,60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2,868,993천원(일반예비비 3,345,061천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9,523,932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2019년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2,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2019년 제3회 추경 후 2019년 12월 31일까지 교부되는 국·시비보조금(구비부담분 포함),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목적 기부금 등은 예산의결(명시이월 승인 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통보한다.

※ 예산서 자원 표기

[국] 국고보조금, [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 기 금

[특] 특별교부세, [별] 특별조정교부금, [시] 시비보조금, [구] 자체재원